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사 : 2003. 11.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2003. 11. 26
- 다. 상 정 일 자 : 2003. 11. 27

2. 제안설명

가. 제안설명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나. 제안사유

-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생적, 안정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대상지의 현 용도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용이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 치 : 화순군 한천면 가암리 산91번지 일원
- 면 적 : 42,810㎡
- 토지이용현황 : 답 4.21%, 임야 95.79%
- 용도지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용도지역	관리지역(11,848㎡) 농림지역(30,962㎡)	자연녹지지역(42,810㎡)	

- 군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조서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한천면 가암리 산91번지 일원	-	증)42,810	42,810	

○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기물 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시설신설 · 신설면적 : 42,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내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생활폐기물)을 위생적,안정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의 쾌적한 환경보전 및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 및 제43조1항,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으로 결정하고자 함.

○ 용도지역(변경)결정 조사

구 분		면 적 (km ²)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786.211	-	786.211	100.0	
주거 지역	소 계	4.353	-	4.353	0.55	
	제1종전용주거지역	0.005	-	0.005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2.589	-	2.589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98	-	1.198	-	
	제3종일반주거지역	0.388	-	0.388	-	
	준주거지역	0.173	-	0.173	0.02	
상업 지역	소 계	0.544	-	0.544	0.07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0.544	-	0.544	0.07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 지역	소 계	1.153	-	1.153	0.15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153	-	1.153	0.15	
	준공업지역	-	-	-	-	
녹지 지역	소 계	67.957	증) 0.042	67.999	8.65	
	자연녹지지역	61.845	증) 0.042	61.887	7.87	
	생산녹지지역	6.112	-	6.112	0.78	
	보전녹지지역	-	-	-	-	
관리 지역	소 계	220.801	감) 0.011	220.790	28.08	
	보전관리지역	-	-	-	-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	-	-	-	
농 립 지 역		482.105	감) 0.031	482.074	61.32	
자연환경보전지역		9.298	-	9.298	1.18	
미 지 정		-	-	-	-	

※미지정은 해면에 한한다.

○ 행정구역별 지정내역(변경후)

구 분	합 계 (km ²)	면 적 (km ²)					
		화순읍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총 계	786.211	69.695	65.160	49.748	50.194	91.966	15.844
주거지역	4.353	2.626	-	0.254	-	0.207	0.535
제1종전용주거지역	0.005	0.005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2.589	1.163	-	0.207	-	0.199	0.443
제2종일반주거지역	1.198	1.011	-	0.042	-	0.008	0.065
제3종일반주거지역	0.388	0.388	-	-	-	-	-
준주거지역	0.173	0.059	-	0.005	-	-	0.027
상업지역	0.544	0.359	-	0.027	-	0.049	0.050
중심상업지역	-	-	-	-	-	-	-
일반상업지역	0.544	0.359	-	0.027	-	0.049	0.050
근린상업지역	-	-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	-
공업지역	1.153	0.870	-	-	-	0.112	0.171
전용공업지역	-	-	-	-	-	-	-
일반공업지역	1.153	0.870	-	-	-	0.112	0.171
준공업지역	-	-	-	-	-	-	-
녹지지역	67.999	47.331	0.042	2.679	0.181	2.207	1.574
자연녹지지역	61.887	44.652	0.042	2.202	0.181	1.986	1.069
생산녹지지역	6.112	2.679	-	0.477	-	0.221	0.505
보전녹지지역	-	-	-	-	-	-	-
관리지역	220.790	11.812	23.703	17.943	13.474	34.528	6.428
보전관리지역	-	-	-	-	-	-	-
생산관리지역	-	-	-	-	-	-	-
계획관리지역	-	-	-	-	-	-	-
농림지역	482.074	6.697	41.298	28.845	36.539	54.863	7.086
자연환경보전지역	9.298	-	0.117	-	-	-	-
미지정	-	-	-	-	-	-	-

※미지정은 해면에 한한다.

구 분	면 적 (km ²)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북면	동북면	남 면	동 면
총 계	38.205	50.9081	52.698	85.405	62.774	86.556	67.065
주거지역	-	-	-	-	0.301	0.430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0.259	0.318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0.020	0.052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	-
준주거지역	-	-	-	-	0.022	0.060	-
상 업 지 역	-	-	-	-	0.018	0.041	-
중심상업지역	-	-	-	-	-	-	-
일반상업지역	-	-	-	-	0.018	0.041	-
근린상업지역	-	-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	-
공 업 지 역	-	-	-	-	-	-	-
전용공업지역	-	-	-	-	-	-	-
일반공업지역	-	-	-	-	-	-	-
준공업지역	-	-	-	-	-	-	-
녹 지 지 역	0.200	-	6.759	-	2.306	4.729	-
자연녹지지역	0.200	-	6.750	-	1.626	3.179	-
생산녹지지역	-	-	-	-	0.680	1.550	-
보전녹지지역	-	-	-	-	-	-	-
관 리 지 역	15.283	14.969	11.323	27.231	13.629	18.829	11.638
보전관리지역	-	-	-	-	-	-	-
생산관리지역	-	-	-	-	-	-	-
계획관리지역	-	-	-	-	-	-	-
농 립 지 역	22.722	35.728	34.625	58.174	41.839	58.231	55.427
자연환경보전지역	-	0.204	-	-	4.681	4.296	-
미 지 정	-	-	-	-	-	-	-

※미지정은 해면에 한한다.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m ²)	용적율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한천면가암리 820번지 일원	관리지역	자연녹지 지역	11,848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내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생활폐기물)을 위생적, 안정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의 쾌적한 환경보전 및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바 ·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 및 제43조1항,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한천면가암리 산91번지 일원	농림지역	자연녹지 지역	30,962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내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생활폐기물)을 위생적, 안정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의 쾌적한 환경보전 및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바, ·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 및 제43조1항,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근성)

-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상 국토계획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결정을 위한 군의회 의견청취 사항으로 현재까지 원만히 진행중인 사안으로 판단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4. 질의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첨부 :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안

郡計劃施設(폐기물처리시설)決定을 위한 郡管理計劃 立案(案)

□ 근거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 동법 시행령 제22조

□ 입안 사유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생적, 안정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대상지의 현 용도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용이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 군관리계획 입안(안) 내용

- 위 치 : 화순군 한천면 가암리 산91번지 일원
- 면 적 : 42,810㎡
- 토지이용현황 : 답 : 4.21%, 임야 : 95.79%
- 용도지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용도지역	관리지역(11,848㎡) 농림지역(30,962㎡)	자연녹지지역(42,810㎡)	

- 군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조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 기 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한천면 가암리 산91번지 일원	-	증)42,810	42,810	

■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 신설면적 : 42,810m ²	<p>· 군내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생활폐기물)을 위생적, 안정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의 쾌적한 환경보전 및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p> <p>·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 및 제43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으로 결정하고자 함.</p>